청양군 고시 제 2020 - 28호

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등 변경고시

「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0. 04. 09.

청 양 군 수

1. 시행일시 : 2020. 4. 10.(금)
2. 이용대상
   ▶(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)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, 임산부 등
3. 이용시간 : 평일(09:00~18:00)
4. 회원등록 : 041-942-2111(청양군 이동지원센터)
5. 이용신청 : 1644-5588(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)
6. 이용요금

구분	기존요금	변경요금	비 고
관내	▶ (기본요금) 1.5km까지 1,000원 ▶ (추가요금) -(거리)km/300원	▶ (기본요금) 2km까지 1,300원 (청양군 시내버스 기본운임) ▶ (추가거리요금) km당 130원 (운임상한액) 청양군 시내버스 요금 2배 이하 (2,600원)	(충청남도 표준 운영매뉴얼 적용)
관외	▶ 지역별 정액요금	▶ km당 260원 (운임상한액) 청양군 시외버스 요금 2배 이하	(충청남도 표준 운영 매뉴얼 적용)
대기요금		▶ 편도운영 원칙, 배차효율성이 높아질 경우에 왕복으로 운행 ▶ 왕복운행 대기 필요시 최대 2시간대기 (단, 병원진료시 최대 3시간 대기) ※ 차량대기 필요시 대기료 30분당 2,000원	(충청남도 표준 운영 매뉴얼 적용)

※ 관내 최대요금은 청양군 **시내버스 요금 변동**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